

<p>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설계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조례 제12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1건당)</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인 × 2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입찰안내서 심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인 × 2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일괄입찰</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 업체 응찰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인 × 2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 업체부터 4개 업체 응찰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4,5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인 × 3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본설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개 업체부터 6개 업체 응찰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인 × 4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심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7개 이상 업체 응찰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인 × 5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타 심의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인 × 2일 × 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타 심의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인 × 2일 × 5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수수료(1건당)	비 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일괄입찰	2개 업체 응찰시	3,000,000원	30인 × 2일 × 50,000원	공사	3개 업체부터 4개 업체 응찰시	4,500,000원	30인 × 3일 × 50,000원	기본설계	5개 업체부터 6개 업체 응찰시	6,000,000원	30인 × 4일 × 50,000원	심의	7개 이상 업체 응찰시	7,500,000원	30인 × 5일 × 5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구 분	수수료(1건당)	비 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일괄입찰	2개 업체 응찰시	3,000,000원	30인 × 2일 × 50,000원																													
공사	3개 업체부터 4개 업체 응찰시	4,500,000원	30인 × 3일 × 50,000원																													
기본설계	5개 업체부터 6개 업체 응찰시	6,000,000원	30인 × 4일 × 50,000원																													
심의	7개 이상 업체 응찰시	7,500,000원	30인 × 5일 × 5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인 × 2일 × 50,000원																														
<p>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p> <p>제27조제1항제2호중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면적 이상인 자"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2조제1호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가 목 내지 다목의 규정중 취득의 범위는 공동주택(그 지분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를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중 취득의 범위는"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양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취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주택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p> <p>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548</td> <td style="padding: 2px;">2000년 5월 일 교 통 위 원 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3일</p> <p>다. 상정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0. 3. 7)</li> <li>-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소위 구성</li> <li>○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li> </ul>		의안 번호	548	2000년 5월 일 교 통 위 원 회																												
의안 번호	548	2000년 5월 일 교 통 위 원 회																														

<p><b>교통위원회(2000. 5. 1)</b>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결</p> <p><b>2. 제안설명의 요지</b>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p> <p><b>가. 제안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0개 권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중 은평권역이 상반기에 공사가 완공 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li> </ul> <p><b>나. 주요골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차고지 설치권역 설정 및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안 제3조)</li> <li>◦ 공영차고지 입주대상 및 입주 우선순위 선정(안 제4조)</li> <li>◦ 입주업체 사용료 규정(안 제5조)</li> <li>◦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탁근거 규정(안 제9조)</li> </ul> <p><b>3.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b> (전문위원 : 김태호)</p> <p><b>가. 사용료(안 제5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동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li> <li>◦ 동조례에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있어 법령상 문제는 없음.</li> <li>◦ 한편,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음.</li> <li>◦ 시내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 버스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나, 공영차고지 조성에는 막대</li> </ul>	<p>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차고지 운영에 따른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할지라도, 운영관리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여 계속하여 예산에서 보전하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사용요율의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b>4. 절의 및 답변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p><b>5. 토론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p><b>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b> (심사보고 : 소위원회위원장 김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례안은 은평권역 차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li> <li>◦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정기준)와 관련하여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li> <li>◦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입법·상법 등에서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주사무소는 대부분 노선의 기점이나 종점 중에 한 곳에 있으므로, 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을 조례의 부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은 제출함.</li> <li>◦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중 “재산평정가격”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으로 하고,</li> <li>◦ 조례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 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본칙의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li> </ul> <p><b>7. 수정안의 요지</b></p> <p><b>가. 수정이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례안 중 공영차고지 입주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평정가격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정기준)와 관련하여 볼</li> </ul>
---	---

<p>때 재산평정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차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주사무소는 대부분 노선의 기점이나 종점 중에 한곳에 있으므로, 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을 조례의 부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li> </ul> <p>나. 수정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안 제5조제1항 제1호)</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정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이상</li> <li>- 수정안 : ‘재산평정가격’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으로 수정</li> </ul> <li>○ 주사무소 위치구분의 적용시점(안 부칙)</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안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본칙의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li> </ul> </li> </ul> </ul>	<p>안 제5조제1항 제1호중 “재산평정가격”을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으로 한다.</p> <p>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 <li>②(주사무소 위치 구분의 적용시점)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주사무소의 위치 구분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li> </ul> <hr/> <p>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li> <li>2. “수탁자”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li> <li>3. “권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10개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써 각 권역의 행정구역은 별표1과 같다.</li> </ol> <p>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시장은 별표1의 각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위치 및 관할 행정구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한다.</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p>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 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종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